

2023년 제3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모집공고

2023.12.15.

공급절차 및 일정

| | | | |
|--|---|---|---|
| <p>입주자 모집공고</p> <p>'23.12.15.(금)</p> <p>공사 홈페이지</p> | ▶ | <p>청약신청 접수기간</p> <p>'23.12.26.(화) ~ '23.12.29.(금)</p> <p>'인터넷청약 신청만 가능'</p> | ▶ |
| <p>서류제출기간</p> <p>'23.12.26.(화) ~ '24.01.05.(금)</p> <p>'등기우편 접수만 가능' (인터넷신청자 전원제출)</p> | ▶ | <p>소득·자산·자동차 소명</p> <p>'24.02.26.(월) ~ '24.03.06.(수)</p> <p>소명서류 제출 등기우편만 가능 (대상자별도통보)</p> | ▶ |
| <p>입주대상자 발표</p> <p>'24.03.15.(금) 예정</p> <p>공사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p> | ▶ | <p>권리분석 심사 및 계약체결</p> <p>2025년 03월 14일(금)까지</p> | |



차례

| | |
|--------------------|----|
| 1. 사업개요 | 3 |
| 2. 신청자격 | 5 |
| 3. 신청 및 입주대상자 선정절차 | 12 |
| 4. 입주대상자 계약체결 및 지원 | 17 |
| ※ 인터넷청약시스템 매뉴얼 | 25 |

2023년 제3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모집공고

서울시 무주택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세입자에게
전월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의 입주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실주택을 공급하지 않고 순수 보증금 일부만 지원합니다.

1

사업개요

▶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서울시 무주택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 최대 6천만원**을 서울시가 **무이자**로 지원하여, **최장 10년**까지 보증금 인상 걱정을 덜고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단, 보증금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50% 이하, 최대 4천5백만원 한도)

▶ 사업지역 및 공급 호수

○ 사업지역 : 서울특별시

○ 입주대상자 모집호수 : 2,000호(평균지원금을 기준으로 추정한 호수로 예산 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일반공급 1,800호(90%)

- 특별공급(신혼부부) 100호(5%), 특별공급(세대통합) 100호(5%)

* 보증금 지원기간 : 입주대상자 발표일 ~ 2025.03.14.(금)까지

○ 대상주택 및 지원내용

- 대상주택 : 건축물관리대장상 1)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다중주택 제외),

2)상가주택*, 3)다세대주택·연립주택*, 4)아파트*, 5)오피스텔*

지원가능(이외의 건물은 지원 불가)

* 상가주택 중 용도가 주거용인 부분의 계약에 대해서만 지원가능(근린생활시설 불가)

* 오피스텔 : 전입신고 및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 위법건축물인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오피스텔 : 옥상 등 공용부분이 위법건축이라도 전용 부분이 위법건축사항이 없을 경우 가능 (단, 건축물대장 전유부에만 위법건축물이 표기된 경우 지원불가)

| 구 분 | | 전 세 | 보증부월세 |
|-------|-------|--|--|
| 대상 주택 | 면적 | 전용면적 60㎡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 | |
| | 보증금 등 | <u>전세보증금 4억 9천만원 이하</u> | <u>기본보증금 + 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가 4억 9천만원 이하</u> |
| 지원금액 | |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원) | 기본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원) |
| | | ※ 1억 5천만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 (단, 최대 4천5백만원 까지) | |

※ 전세전환보증금 = 월세금액 x 12 / 전환율 4%

※ 연장계약(재계약)시 전환율은 변경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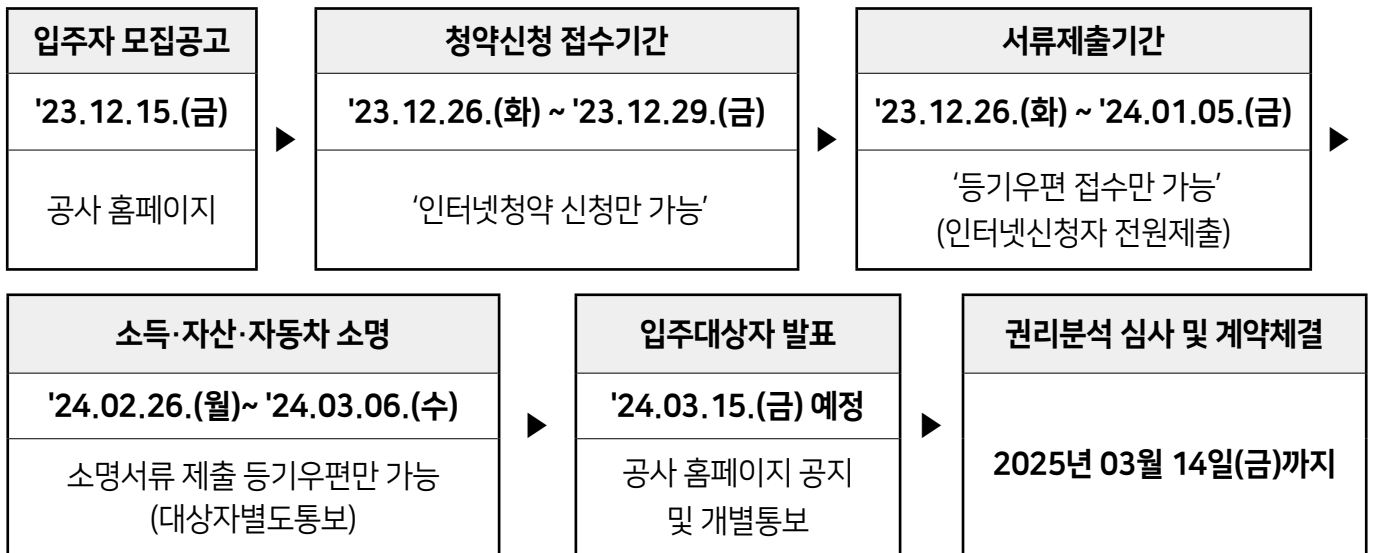
○ 지원기간 :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가능 [10년간 총 5회(최초계약 포함)]

※ 재계약 요건 : 입주자 신청자격 유지

○ 임대인 중개보수 지원 : 주택 물색 시 공인중개사에게 의뢰 · 중개받을 경우,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할 중개보수(중개수수료)는 서울시 재원으로 전액 지원

※ 기존 거주 주택에서 계약 시 임대인 중개보수 지원 불가

▶ 공급절차 및 일정



※ 상기 일정은 제반여건상 이유로 변경될 수 있음. (변경시 홈페이지 공고 및 공지란에 게시)

※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청약자의 안전을 위해 방문 대행 신청 및 방문 서류 제출은 불가하오니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 컴퓨터와 모바일을 이용한 인터넷 신청 접수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후 서류제출은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공사 1층 맞춤주택공급부로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관련 문의

- 대표전화 및 인터넷 청약관련 등 문의 : 1600-3456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 상담관련 유의사항

- * 청약은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므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와 관련하여 콜센터 등을 통하여 상담을 시행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한 정보나 상황에 대한 자료 없이 상담을 진행하오니 청약과 관련한 전화상담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자격 - 일반 / 특별(신혼부부) / 특별(세대통합)

▶ 일반공급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12.15.) 현재 서울특별시내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①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함)
- ②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원 이하일 것

일반공급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

| |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기준 | 심사내용 |
|----|-------|----------------|---|
| 소득 | 1인 가구 | 4,024,661원 이하 | ○ 왼쪽 월평균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금액임. ※ 1인/2인가구는 가산 적용 (좌측표에 기반함)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태아(수)를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태아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함. ○ 월평균소득은 왼쪽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원별 소득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사 확인하는 소득으로서 근로소득(상시 일용 자활 공공), 사업소득(농업 임업 어업 기타), 재산소득(임대 이자 연금),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 등을 말함. ※ 소득·자산심사의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 당시의 소득·자산을 모집 공고일 당시의 소득으로 간주함. ※ 왼쪽 가구원(세대원)기준은 이하 무주택,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 보유기준에도 동일하게 적용. ※ 소득항목별 세부내용은 공고문 후단 별표1 참조 |
| | 2인 가구 | 5,505,914원 이하 | |
| | 3인 가구 | 6,718,198원 이하 | |
| | 4인 가구 | 7,622,056원 이하 | |
| | 5인 가구 | 8,040,492원 이하 | |
| | 6인 가구 | 8,701,639원 이하 | |
| | 7인 가구 | 9,362,786원 이하 | |
| | 8인 가구 | 10,023,933원 이하 | |

일반공급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

| | |
|---------------------|---|
| 부동산 (토지, 건축물) | <p>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 (토지가액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건축물의 공시가격) ⇒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음</p> <p>1)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하되,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p> <p>2) 토지가액(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건축물의 토지가액을 포함)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제2조1호에따른 농지로서 같은법 제49조에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의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 <p>※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 및 건축물을 대상으로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가액(건물 및 토지가액) 포함.</p> |
| 자 동 차 | <p>현재가치 기준 3,683만원 이하[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차량가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단,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경우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기준으로 산정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p> <p>※ 자동차(『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p> <p>※ 동일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p> |

※ 모든 자격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 12. 15.)부터 입주 시까지 유지해야 함.

▶ 특별공급 신청자격(신혼부부)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 12. 15.)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① 아래의 신혼부부 신청자격을 가진 자
- ②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함)
- ③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원 이하일 것

| 신혼부부 신청자격 | |
|--|--|
| 1순위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
| 2순위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기간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며(재혼 포함), 소득 심사 시 임신 중인 자녀는 세대원에 포함 - 자녀 유무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자녀로 확인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이후 출생신고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관계 인정)로 판단하며,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 적용 - 임신중인 경우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및 태아 수 확인 가능한 임신진단서(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임신진단서 제출)로 신청자격 여부 확인(임신 주수 및 태아 수 기재된 진단서 제출하되 태아 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 - 재혼한 경우에는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 인정 | |

※ 임신사실의 확인을 위한 서류는 임신주수가 확인이 가능한 **임신진단서**만으로 가능하며, 기타 다른 확인서류로는 불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 | | | |
|--------------------|-------|----------------|--|
| |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기준 | 심사내용 |
| 소득 | 1인 가구 | 4,695,438원 이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왼쪽 월평균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금액임. ※ 1인/2인가구는 가산 적용 (좌측표에 기반영)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태아(수)를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태아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함. ○ 월평균소득은 왼쪽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원별 소득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사 확인하는 소득으로서 근로소득(상시 일용 자활 공공), 사업소득(농업 임업 어업 기타), 재산소득(임대 이자 연금),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 등을 말함. ※ 소득·자산심사의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 당시의 소득·자산을 모집공고일 당시의 소득으로 간주함. ※ 왼쪽 가구원(세대원)기준은 이하 무주택,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 보유기준에도 동일하게 적용. ※ 소득항목별 세부내용은 공고문 후단 별표1 참조 |
| | 2인 가구 | 6,506,989원 이하 | |
| | 3인 가구 | 8,061,838원 이하 | |
| | 4인 가구 | 9,146,467원 이하 | |
| | 5인 가구 | 9,648,590원 이하 | |
| | 6인 가구 | 10,441,967원 이하 | |
| | 7인 가구 | 11,235,343원 이하 | |
| | 8인 가구 | 12,028,720원 이하 | |

특별공급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

| | |
|------------------------------|--|
| 부동산 (토지, 건축물) | <p>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 (토지가액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건축물의 공시가격) ⇒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음</p> <p>1)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하되,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p> <p>2) 토지가액(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건축물의 토지가액을 포함)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외. - 「농지법」 제2조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의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p> <p>※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 및 건축물을 대상으로 함.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3조에 의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가액(건물 및 토지가액) 포함.</p> |
| 자동차 | <p>현재가치 기준 3,683만원 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차량가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단,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경우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기준으로 산정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p> <p>※ 자동차(『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p> <p>※ 동일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p> |

※ 모든 자격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12.15.)부터 입주 시까지 유지해야 함.

▶ 특별공급 신청자격 (세대통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12.15.) 현재 서울특별시내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① 아래의 세대통합형 신청자격을 가진 자
- ②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함)
- ③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원 이하일 것

| 세대통합형 신청자격 | |
|------------|--|
| 1순위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고 자녀가 있는 자 (임신 중 또는 입양 포함) |
| 2순위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자 |

- 직계존속의 연령 및 부양기간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산정
- 직계존속 계속 부양여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에 의하고 해당기간을 계속하여 부양해야 인정
- 자녀 유무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자녀로 확인
- 기타 세부사항(자녀, 임신, 입양 등)은 신혼부부형 특별공급과 동일

| 특별공급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 | | | |
|---------------------|--------------------------------|----------------|--|
| 소득 |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기준 | 심사내용 |
| | 1인 가구 | 4,695,438원 이하 | ○ 왼쪽 월평균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금액임. ※ 1인/2인가구는 가산 적용 (좌측표에 기반영)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u>태아(수)를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태아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함.</u> ○ 월평균소득은 왼쪽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원별 소득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사 확인하는 소득으로서 근로소득(상시 일용 자활 공공), 사업소득(농업 임업 어업 기타), 재산소득(임대 이자 연금),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 등을 말함. ※ 소득·자산심사의 경우 <u>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 당시의 소득·자산을 모집공고일 당시의 소득으로 간주함.</u> ※ 왼쪽 가구원(세대원)기준은 이하 무주택,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 보유기준에도 동일하게 적용. ※ 소득항목별 세부내용은 공고문 후단 별표1 참조 |
| | 2인 가구 | 6,506,989원 이하 | |
| | 3인 가구 | 8,061,838원 이하 | |
| | 4인 가구 | 9,146,467원 이하 | |
| | 5인 가구 | 9,648,590원 이하 | |
| | 6인 가구 | 10,441,967원 이하 | |
| | 7인 가구 | 11,235,343원 이하 | |
| | 8인 가구 | 12,028,720원 이하 | |
| 부동산 (토지, 건축물) | ※ 특별공급(신혼부부)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과 동일 | | |
| 자동차 | | | |

※ 모든 자격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 12. 15.)부터 입주 시까지 유지해야 함.

“무주택세대구성원 용어” 안내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1인으로 다음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세대구성원의 범위(자격검증대상)

- ① 주택공급신청자
- ②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세대 분리된 경우도 포함)
- ③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④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 신청자격 해당여부, 가점사항 등은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 「민법」상 미성년자는 자녀를 양육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세대주인 경우와,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 구분 | 내용 | 비고 |
|------------|--|---|
|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 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 대상에 포함 | * 배우자의 자격검증이 불가능한 사람의 경우 신청불가(아래) - 국내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이 되어있지 않은 외국인 - 주민등록말소자,거주불명자 등 |
| 외국인 직계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

※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세대구성원의 태아도 세대구성원으로 포함합니다.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중인 사람
-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 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신청자 경쟁 시 입주자 선정방법 [일반공급, 특별공급]

- 자격요건을 갖춘 신청자가 공급호수를 초과할 경우 다음 가점기준에 따라 선정

| 구 분 | 3점 | 2점 | 1점 | | | | | |
|--|-------------|------------------|------------------|-------------|-------------|-------------|-------------|-------------|
| ① 신청자 나이(만 연령 기준) | 50세 이상 | 40세 이상 50세 미만 | 30세 이상 40세 미만 | | | | | |
| ② 부양가족 수(하단 세부사항 참조) | 3인 이상 | 2인 | 1인 | | | | | |
| ③ 서울특별시 연속거주기간(만19세 이후) | 5년 이상 | 3년 이상 5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 | | | |
| ④ 미성년(만19세 미만)자녀(태아수 포함) 수 [2004.12.16. 이후 출생자] | 3자녀 이상 | 2자녀 | - | | | | | |
| ⑤ 사회취약계층(1개 항목만 인정) 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3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 2점 다)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 2점 | | | | | | | | |
|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
| 월평균소득 50% 금액 | 1,676,942원 | 2,502,688원 | 3,359,099원 | 3,811,028원 | 4,020,246원 | 4,350,820원 | 4,681,393원 | 5,011,967원 |

※ 부양가족수 : 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부(신청자 본인제외) ②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신청자의 형제자매 [만19세 미만(2004.12.16. 이후 출생자) 또는 만60세 이상(1963.12.15. 이전 출생자)인 자에 한함] ③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되는 태아

- 평가항목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동일점수인 경우 부양가족수, 신청자연장자순으로 입주자 선정(생년월일이 같아 경합시 전산추첨)**

- 미성년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의거 산정하며 이(재)혼의 경우 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 인정

- 서울시 거주기간은 만19세 이후부터 기산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서울특별시 최종 전입일부터 기산)하여 서울특별시에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며, 말소된 경우 말소 이후 재등록일로부터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의미함.

- 가점은 신청자 본인이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단, ⑤ 사회취약계층 가항 기초생활수급자, 나항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세대원도 인정

- 모든 자격 요건(입주자 자격 및 가점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2.15.)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후 자격요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 시까지 자격유지를 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하여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

▶ 초과신청 시 입주자 선정방법 및 중복신청 불가 안내

자격요건을 갖춘 신청자가 공급호수를 초과하는 경우 아래 신청자 경쟁 시 입주자 선정방법에 따라 선정하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은 불가능하며, 특별공급 탈락자는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신청 제한

신청자 및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이 국민임대주택, 재개발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행복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 등 정부(LH공사 포함)또는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구 SH공사) 포함]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입주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됨. 단, 계약체결 전까지 타 공공임대주택의 계약을 취소하거나, 장기안심주택 입주전까지 퇴거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함.

3

신청 및 입주대상자 선정절차

인터넷
청약 신청

- 접수기간

* 인터넷 청약 신청 접수기간 : 2023.12.26.(화) 10:00 ~ 12.29.(금) 17:00
(인터넷 청약 신청 : 접수기간 내 24시간 가능)

※ 공사 방문 대행 신청은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및
심사

- 제출기간 : 2023.12.26.(화) ~ 2024.01.05.(금)

-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맞춤형주택공급부 장기안심신규담당자 앞

○ 인터넷 신청하신 분들은 제출기간 내에 공고문 후면 서류심사 제출서류(공통제출서류/가점제출서류) 세부내역을 확인하신 후 해당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입주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필요시 보완서류 제출 요청)하여 입주대상자 발표예정입니다.

※ 기간중 별도 서류제출안내 문자통보 없음

○ 우편접수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접수, 2024.01.05.일자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소명대상자 발표,
소명 서류접수 및 심사
(소득 및 부동산,
자동차, 공공임대주택
기입주자 소명)

- **소득·자산·자동차 소명 : 2024.02.26.(월) ~ 03.06.(수) 예정**
- 소명대상자에 대하여 등기우편을 통하여 개별 통보됩니다.
- 소명기간 및 방법은 발송되는 우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증빙 관련 추가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득기준 초과로 확인될 경우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되지 않을 경우, 입주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소유 부동산 자동차보유 기준 초과로 확인될 경우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되지 않을 경우 입주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공공임대주택 기입주자로 확인될 경우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되지 않을 경우 입주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 우편접수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접수, 2024.03.06.일자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입주대상자 발표

- **입주대상자 발표일 : 2024.03.15.(금) 예정**
- 공사 홈페이지 공지(우측 또는 아래 공고 및 공지란 클릭) 및 개별 통보

계약체결

- **자격심사(해당주택 권리분석 등) 통과자에 대하여 2025년 03월 14일(금)까지 계약체결**

※ 신청자가 작성한 내용을 근거로 제출서류와 신청내용[자격요건(무주택여부, 월평균소득, 부동산, 자동차), 주민등록번호, 부양가족수, 서울시 거주기간, 자녀수, 특별공급 자격여부 등]이 다를 경우 입주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내용 오류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신청서 작성시 신청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신청이 완료된 후에는 가점사항 추가 등 어떠한 경우에도 수정이 불가합니다.

※ 소득심사, 자산소명, 입주대상자 발표 관련사항은 홈페이지 발표 또는 우편, SMS로 통보 예정이므로 신청시 정확한 연락처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연락처 변동 시 공사(SH) 맞춤형주택공급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자산심사의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당시의 소득·자산을 모집공고일 당시의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 관련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권리분석심사를 마치고 2025년 03월 14일까지 계약체결된 경우에 한하여 한도내 지원가능합니다.

※ 권리분석 심사 후 계약체결까지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 상기 일정은 예정일정으로 업무처리 여건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인터넷 신청안내 (* 25페이지 인터넷 청약 시스템 매뉴얼 참조)

"인터넷 청약, 스마트폰으로도 OK!", "24시간 가능한 인터넷 청약 (마감시간 내)"

[장기안심주택 인터넷 신청은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로 청약접수 받습니다.
반드시 새로운 주소로 청약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가 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서류심사대상자가 결정되며, 제출서류와 신청내용[자격요건(무주택여부, 월평균소득, 부동산, 자동차), 주민등록번호, 부양가족수, 서울시거주기간, 자녀수, 특별공급 자격여부 등]이 다를 경우 서류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인터넷 신청기간 이후 신청이 완료된 후에는 가점사항을 추가할 수 없으므로** 공고내용을 정확히 인지한 후 해당 서류를 사전에 발급받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사전준비사항

- 개인용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인터넷 청약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는 인터넷뱅킹을 위하여 은행에서 발급한 인증서나,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중 하나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소지하셔야 합니다.

○ 인터넷 신청

- 공고문상에 안내되어 있는 신청자격, 소득금액, 가구원 수 등을 확인한 후 청약신청 접수 기간 내에 서울주택 도시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 청약

※ 신청순서 :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 (<http://www.i-sh.co.kr/app>) 에 접속 (PC 및 모바일 가능) → **1단계**(장기안심주택 청약하기 클릭) → **2단계**(장기안심 모집공고 청약중 클릭) → **3단계**(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확인) → **4단계**(일반공급/특별공급 선택하여 청약하기) → **5단계**(신청자격 확인/공급유형, 가구당 월평균소득 체크) → **6단계**(인적사항작성 및 청약서약/개인정보동의 등) → **7단계**(가점사항 입력) → **8단계**(인증서 최종 확인) → **9단계**(나의 청약내역 확인)

- 공동인증서가 안되시는 분께서는 네이버인증서 혹은 금융인증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네이버인증서 로그인 후 실명확인이 안되시는 분께서는 공동인증서 혹은 금융인증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시간

인터넷 신청시간은 **2023.12.26.(화) 10:00 ~ 12.29(금) 17:00** 기간 내 24시간 가능하며, 신청마감 시간까지 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할 경우 신청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시 최종확인 완료하시면 수정이 불가능하니 신청서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내에는 신청취소 후 재신청의 방법으로 수정가능)

※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일시적인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원활한 청약접수를 위하여 접속자가 몰리지 않는 시간대에 다시 접속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인터넷 청약 신청 후 제출서류(등기우편 제출)

★ 모든 서류는 **공고일(2023.12.15.) 이후 발행분 제출** ★
 서류 미제출, 누락 시 심사 불가하며, 팩스 접수 불가, 제출서류는 반환 불가함.

● 공통제출서류

| 제출서류 | 제출서류 | 발급처 |
|------------------------|--|----------------------------|
|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무주택세대구성원전원의 동의를 받아 제출 ※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 및 접수가 거부됨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장기안심주택모집공고) |
| 가족관계증명서 | - 신청자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되도록 발급 | 행정복지센터 및 정부24홈페이지 |
| 주민등록표등본 | - 신청자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상세증명서) ※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표기되도록 발급 ☞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행정복지센터 및 정부24홈페이지 |
| 주민등록표초본 | - 신청자본인의 주민등록표초본 ※ 과거주소 5년 이상 변동내역 모두확인 가능하게 발급 | 행정복지센터 및 정부24홈페이지 |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해당자만 제출> - 배우자가 신청자의 주소와 분리된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표기되도록 발급 | 행정복지센터 및 정부24홈페이지 |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 배우자가 외국인이면서 신청자의 등본에 확인이 안되는 경우 | 행정복지센터 및 정부24홈페이지 |

| 제출서류 | 제출서류 | 발급처 |
|-----------------|---|-------------------|
| 피부양자 주민등록표초본 | <p><세대통합특별공급 신청자만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양자의 주민등록표초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양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과거주소 변동내역 모두 확인 가능하게 발급 | 행정복지센터 및 정부24홈페이지 |
| 혼인관계증명서 | <p><신혼부부특별공급 신청자만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되도록 발급 | 행정복지센터 및 정부24홈페이지 |
| 임신진단서 | <p><해당자만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주수 및 태아 수 기재된 원본에 한하며, 부양가족, 미성년자녀 수 등에서 임신 중인 태아 수를 인정받은 자에 한하여 제출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임신 증임을 확인할 수 있는 <u>임신진단서</u> (임신 주수 및 태아 수 기재)에 한하며 <u>임신확인서</u> 및 <u>진료내역 확인서</u>는 제출불가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

▶ **가점제출서류(해당자만 제출)**

| 가점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인 자 | -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 지방보훈청 |
|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인 자 | - 5.18민주유공자 증명원 | 지방보훈청 |
|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인 자 | - 특수임무수행자 증명원 | 지방보훈청 |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 일본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가족부 |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 한부모가족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 북한이탈주민 |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해당구청 및 정부24홈페이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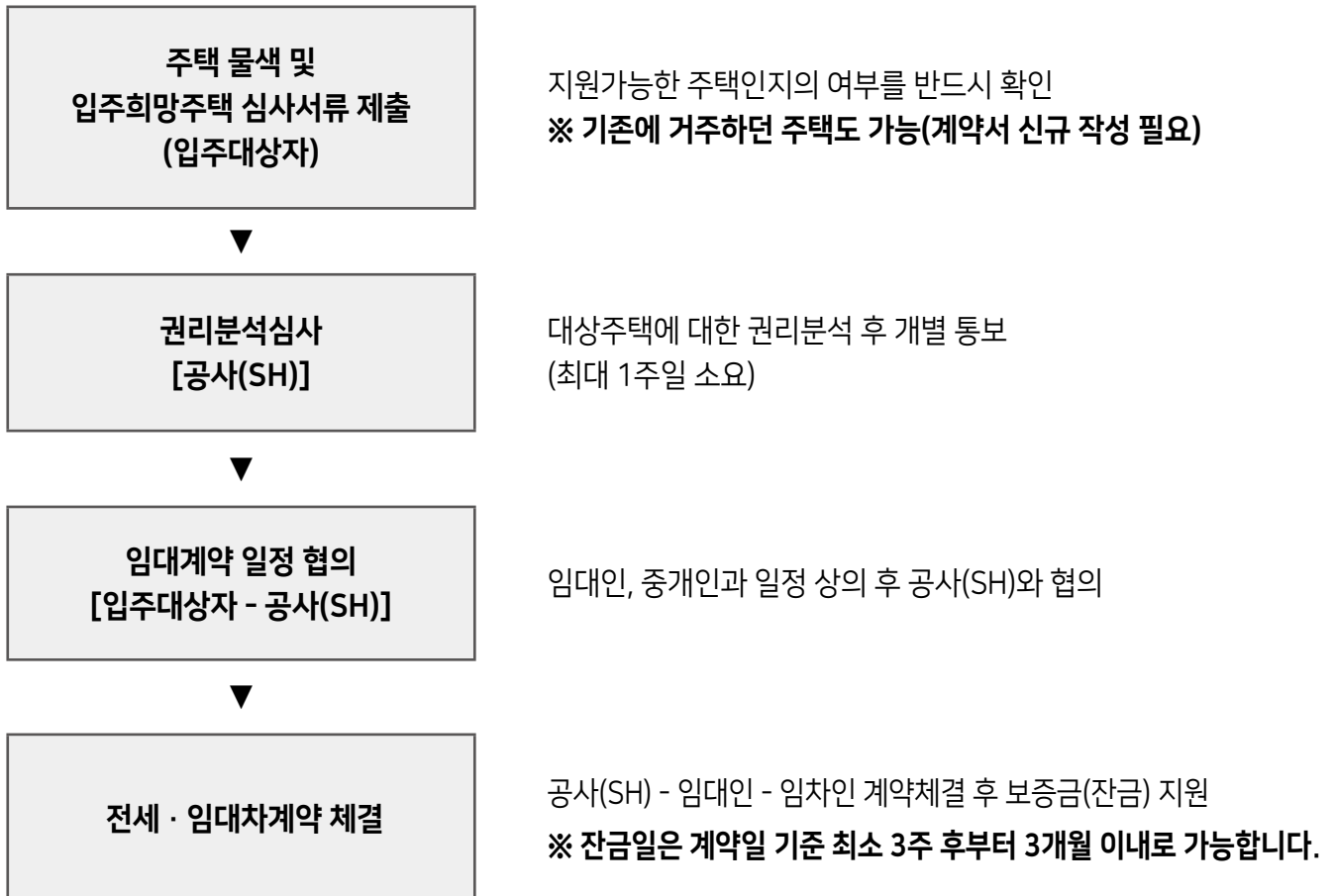
| 가점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 - 추천서(자치구확인) -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장, 해당구청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의한 차상위계층 | -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만 가능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보장개시일 명시) • 자활근로자 확인서 (사회보장급여결정통지서첨부) • 장애(아동) 수당대상자 확인서 (사회보장급여결정통지서 첨부) | 행정복지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

4

입주대상자 계약체결 및 지원



▶ 계약절차



▶ 계약기한 : 2025년 03월 14일(금) 까지

- **적격한 입주대상자라 할지라도 계약기한내 전세·임대차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지원을 받으실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권리분석 심사표 제출 후(적격시) **계약체결까지 1~2주정도 소요되오니 계약기한만료 2주전까지 권리분석을 진행해 주셔야 계약이 가능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장기안심주택은 **1세대당(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만** 신청 및 계약이 가능합니다.
- 소득심사, 자산소명, 입주대상자 발표 관련사항은 홈페이지 발표 또는 우편, SMS로 통보 예정이므로 신청 시 **정확한 연락처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연락처 변동 시 공사(SH) 맞춤형주택공급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대상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은 장기안심주택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택 물색 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자격 요건(입주자 자격 및 가점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후 자격요건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입주 시까지 자격유지를 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하여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장기안심주택은 **목시적 갱신이 되지 않으며, 2년마다 자격심사를 통하여 입주자격에 적합할 경우에만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합니다. 자격심사를 거치지 않거나 심사 결과 부적격한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해지**되며, 이 경우 반드시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전세·임대차계약 기간만료전 입주대상자의 사유로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 제반비용(공인중개사 보수 등)은 입주대상자가 부담하며, 1회 계약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1회 계약체결로 간주되는 점을 유의**하시어 주택 물색 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년간 계약서 총 5회만 작성 가능**)
※ 반지하 주택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계약횟수산입 없음(신규제외)
- **신규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장기안심주택은 **신청자 명의로만** 계약이 가능합니다.
- 장기안심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직접 입주주택을 물색(또는 기존 거주주택 가능)하여 전월세 보증금 일부를 지원받는 임대주택으로 추진과정에서 일부내용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별 통보해드립니다.
- **보증부 월세는 1년 월세 총 금액(월세×12개월)이 본인 부담 보증금을 넘지 않아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 장기안심주택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입주대상자 선정 전·후로 소득, 주택 소유여부 및 자산 보유기준에 따른 전산 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소명하지 않는 경우와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더라도 소명자료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입주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장기안심주택 전세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적용**되오니 지원 신청 및 전세 임대차계약 체결 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주소 및 연락처 변경 등으로 계약 안내문이 도달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신청자는 주소 및 연락처 변동이 있을 경우 **사전 통보** 바랍니다. (입주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지원자격 등이 취소될 경우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장기안심주택은 **주택입주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필히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입주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장기안심주택은 계약기간 이내에 중도 퇴거하는 경우 2년의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퇴거일에 지원금을 꼭 반납하여야 하며 임대인 및 임차인 모두 공사에 전화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증금지원이 가능한 주택인지 여부를 심사하는 “**권리분석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는 **입주대상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장기안심주택 지원은 보증금보장 **신용보험가입이 가능한 부동산 관련 공부상의 주택**에 한합니다.
- **구분된 세대내의 일부분만을 임대차 하는 경우**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지원을 받으실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임차인을 공동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새로 작성합니다. 이로 인하여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임대차계약 체결 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은 계약 종료사실을 공사에 통보하고 임차목적물(주택)을 반환함과 동시에 임대인은 임대차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서울시 지원금은 공사에게)해야 합니다.
-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차지원사업 등을 포함하여 정부(LH공사 포함), 서울시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장기안심주택 보증금지원은 중복지원으로 불가하므로** 이 점 충분히 인지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 뒤에도 서울주택도시공사 및 서울리츠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에 체납이 있는 경우 장기안심주택 계약이 불가합니다.
-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계약서 이외에 이면계약서 작성은 불가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면계약서를 악용한 사실이 확인 될 시 지원금은 즉시 환수 됩니다.

▶ **주택도시기금(버팀목)대출 관련 유의사항**

-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주택도시기금(버팀목)대출 조건 충족 시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대출이 가능하니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nhuf.molit.go.kr/>)를 참고하시거나 해당은행(우리, 국민, 신한, 기업, 농협)에 상세히 문의 및 상담 후 대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버팀목 대출 및 상담 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을 받는다는 내용을 대출기관에 반드시 알려 주셔야 합니다.
- 기존에 주택도시기금(버팀목) 대출을 받은 상태인 경우 새롭게 작성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계약서”로 **변경 계약을 하여야 하며, 변경 계약을 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문제는 신청자에게 책임이** 있사오니 반드시 은행에 확인 후 변경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기금(버팀목) 대출에 대하여 대출가능여부, 이자율 등은 은행에서 판단하는 사항이오니 **대출관련 모든 사항은 해당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nhuf.molit.go.kr/>) → 개인상품(우측상단) → 주택전세자금 대출 → 버팀목전세자금 → 대출신청
※ 온라인 신청 시 문의 : 주택도시기금 콜센터 1566-9009
- 방문신청 : 우리은행(☎1599-0800), KB국민은행(☎1599-1771), IBK기업은행(☎1566-2566), NH농협(☎1588-2100), 신한은행(☎1599-8000) 각 지점
※ **버팀목 대출시 보증보험 가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차보증금반환 보증보험 가입 관련 안내

- 공사에서는 안정적인 채권회수를 위해 공사가 지원하는 임차보증금에 대해 SGI서울보증을 통한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는 보증금액에 대해 임차보증금반환 보증보험가입을 원하실 경우 **직접 SGI서울 보증 (☎ 1670-70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가입 기준이 개인의 경우 공사와 상이하여 보험가입이 안될 수 있으며, 계약 후에 보험가입 등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 해제 또는 해지 등은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은 추후 계약 만료 시 공사에서 회수해야 할 지원 보증금에 대해서만 공사에서 가입하며,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시는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보험은 '공사'에서 가입하지 않습니다.**
 -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보험 상품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 ※ 공사에서 가입 가능한 상품(법인용)과 입주자 본인이 가입 가능한 상품(개인용)의 가입 기준이 상이하므로, 보증보험의 가입을 원하시는 고객님께서서는 권리 분석 심사 후부터 계약 체결 전까지 SGI서울보증에 문의하여 반드시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 제외주택

1. 보험에 가입하는 날을 기준으로 등기부등본상에 압류·가압류·가등기 및 소유권행사에 제한이 되는 가처분·예고등기 등이 있는 주택(대항요건과 확정일자 모두를 갖춘 날 기준)
 2.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
 3. 보험에 가입하는 날을 기준으로 임차주택의 가격에서 선순위 설정최고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60%를 초과하는 주택
 4. 임차주택이 미등기 건물인 경우
 5.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에 기 가입된 주택의 임대차계약인 경우
 6. 임차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또는 기타 사유에 의거 철거 예정지인 경우
 7. 임대인이 주택건설업체 또는 법인인 경우
 8. 주택에 대한 부채(채권최고액, 임차보증금 등 합계)비율이 90% 초과하는 경우
 9. 위반건축물 (단,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오피스텔은 옥상등 공용부분이 위반건축이라도 전용부분이 위반건축사항이 없을 경우 지원 가능)
 - ※ 건축물대장 전유부에만 위반건축물이 표기된 경우 지원불가
- * 매매중인 주택은 지원 제외

▶ 권리분석 심사시 임차주택 가격 기준

- 국민은행이 제공하는 시세
- 단독, 다가구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최근 주택가격의 180%
- 아파트, 다세대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최근 공동주택가격의 180%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국세청에서 공시하는 최근 기준시가의 130%
- 부동산 등기부 등본 상 1년 이내 거래가격 중 해당하는 금액
- 신축건물일 경우 분양가액
 - ※ 분양가액을 알 수 없는 신축건물의 경우 **제출한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권리분석이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권리분석 심사가 상당기간 소요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음.**

▶ 기타 입주대상자 선정 취소 및 계약 무효되는 경우

- 신청시 기재내용 또는 입주대상자 심사 제출서류를 확인한 결과 신청 사실과 다르거나, 위조 등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 정부(LH공사 포함)또는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구 SH공사) 포함]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장기안심주택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해지 또는 퇴거하지 않을 경우
- 공사(SH)에서 안내된 임대차 계약기간내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입주대상자 발표 이후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등

▶ 대표전화 : 1600-3456(콜센터)

2023. 12. 15.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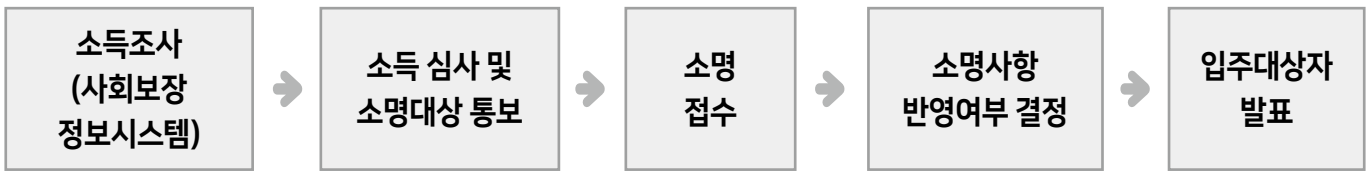
[별표1]

소득항목 설명 및 공적자료(소득자료 출처)

| 구분 | 항목 | 소득항목 설명 | 공적자료(소득자료 출처) |
|------|-----------|--|---|
| 근로소득 | 상시 근로소득 |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 근로복지공단 월평균소득, 국민연금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
| | 일용 근로소득 | 1.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2.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3.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 | 자활 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
| | 공공 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
| 사업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 기타 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 재산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 연금소득 | 민간연금 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 기타소득 | 공적 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상급여 등 |

※ 가구원의 소득은 청약신청 전에 소득자료 출처 기관 등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심사업무 처리절차도



※ 신청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 나온 소득·자산을 모집공고일(2023.12.15.)의 소득으로 간주함.

※ 소득의 일반적인 조사 및 소명처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훈령 고시 또는 지침에 의함.

※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함.

※ 상시근로자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조회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 자료가 확인될 경우 ①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②근로복지공단 월평균소득 ③국민연금공단 자료 ④한국장애인고용공단자료 ⑤국세청자료 순으로 반영됨.

■ 소득소명 반영여부 주요 예시

| 소명사항 | 반영여부 |
|-----------------|-------------------------------|
| 동일사업장 소득 중복 | 반영(높은 금액 반영) |
| 소득자료가 현재 소득과 상이 | 소명기간내 원천기관 자료 수정 및 확인서 제출시 반영 |

※ 소명관련 주요사항을 예시한 것으로 소득 종류에 따라 소명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며, 조회된 공적자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공적자료 원천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함.

[별표2]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검색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해당세대)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세대 분리된 경우도 포함), ②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③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 주택
(주택의 공유지분 또는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간주)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7.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8.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 단,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9.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10.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단, 해당 분양권등을 `18.12.11. 이후 매수한 자는 제외)

인터넷 청약시스템 매뉴얼 [예시]

1.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접속 후

- 인터넷 청약시스템 장기안심 '청약신청하기' 클릭



2. 공고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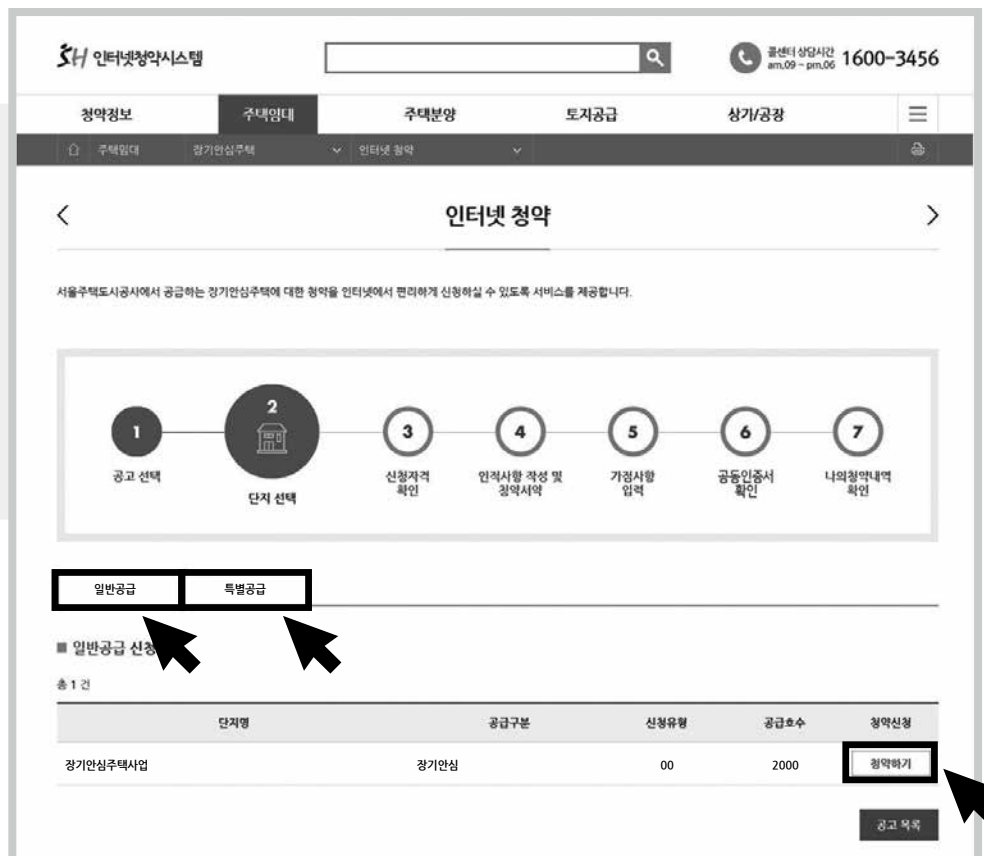
- 2023년 제3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모집공고 '청약중' 클릭



3. 본인인증 (인증서 로그인)



4. 단지선택 (일반공급 또는 특별공급 선택하여 청약하기 신청)



5. 신청자격 확인

- 신청인 인적사항 입력,
신청자격(공급유형/가구당
월평균 소득 체크)

SH 인터넷청약시스템

공선터 상담시간 1600-3456
am.09 - pm.06

청약정보 | **주택임대** | 주택분양 | 토지공급 | 상가공장

주택임대 | 경기안심주택 | 인터넷 청약

인터넷 청약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경기안심주택에 대한 청약을 인터넷에서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1 광고 선택
- 2 단지 선택
- 3 신청자격 확인**
- 4 인적사항 작성 및 청약서약
- 5 가정사항 입력
- 6 공동인증서 확인
- 7 나의청약내역 확인

■ 단지정보

신청단지 | 경기안심주택사업

■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신청자격

공급유형 * 보증금 지원형

가구당 월평균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소득이 50%이하인 경우 기점이 있습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다음단계 | 취소

6. 인적사항 작성 및 청약서약 / 개인정보동의 등 체크

SH 인터넷청약시스템

공선터 상담시간 1600-3456
am.09 - pm.06

청약정보 | **주택임대** | 주택분양 | 토지공급 | 상가공장

주택임대 | 경기안심주택 | 인터넷 청약

인터넷 청약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경기안심주택에 대한 청약을 인터넷에서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1 광고 선택
- 2 단지 선택
- 3 신청자격 확인
- 4 인적사항 작성 및 청약서약**
- 5 가정사항 입력
- 6 공동인증서 확인
- 7 나의청약내역 확인

■ 단지정보

공급유형 | 보증금 지원형

월평균 소득 | 100% 이하

■ 본인 및 배우자 인적사항

본인

7. 가점사항 입력 (신청자 해당 가점 체크)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장기안심주택에 대한 청약을 인터넷에서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광고 선택 → 2 단지 선택 → 3 신청자격 확인 → 4 인적사항 작성 및 청약서약 → **5 가점사항 입력** → 6 공동인증서 확인 → 7 나의청약내역 확인

공고문 보기

■ 단지정보

| | |
|--------|---------|
| 공급유형 | 보증금 지원형 |
| 월평균 소득 | 100% 이하 |

■ 가점사항 (기간 선정 기준 입주자 모집공고일 : 2023년 12월 15일)

서울특별시 거주기간 (만 19세이하) *

서울특별시 권입일자

생년월일(신청자 나이)

부양가족수 명 (태아수 포함)

미성년자 자녀수 명 (태아수 포함)

8. 인증서 최종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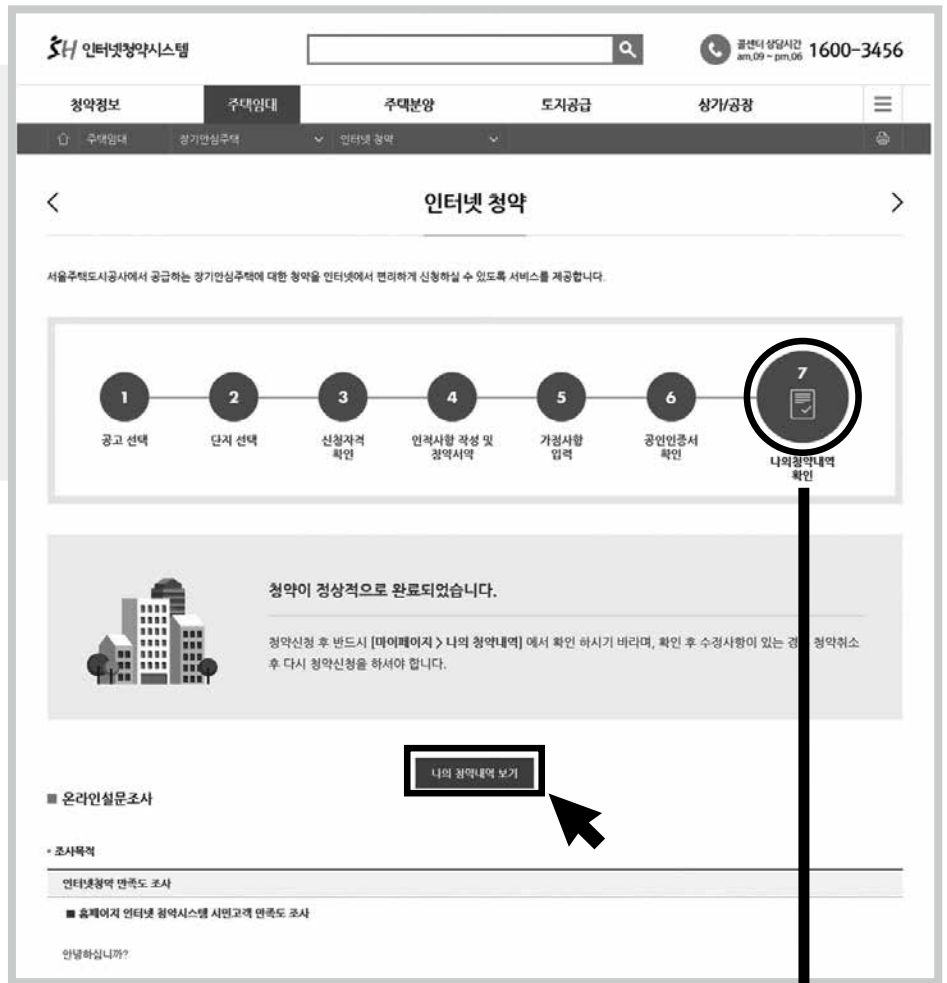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장기안심주택에 대한 청약을 인터넷에서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광고 선택 → 2 단지 선택 → 3 신청자격 확인 → 4 인적사항 작성 및 청약서약 → 5 가점사항 입력 → **6 공동인증서 확인** → 7 나의청약내역 확인

■ 본인 및 배우자 인적사항

* 작성하신 신청서의 내용이 정확하지 다시 한번 검토 하신 후 '최종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 버튼을 누르신 후 내용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9. 나의 청약내역 확인 및 설문응답



■ 온라인설문조사

• 조사목적

장기안심 인터넷청약

■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모집 공고를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되셨나요?

안녕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에 청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조사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서울시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조사결과는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서울시가 함께 공유하여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홍보 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될 예정이며, 응답내용은 조사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Q1.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모집공고를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되셨나요? (다수 체크 가능)

지하철 광고 버스경유경(엘터) 광고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서울시 홈페이지 주거포털 사이트 sns(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신문 보도자료 기타

등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서명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서명 |
|----|--------|----|-----------|----|--------|----|-----------|
| | - | 본인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해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청약업무 수행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등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구분 | 제공 동의 | 개인정보 내역 |
|----|--------------------------|---|
| 기본 | <input type="checkbox"/> |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 - 주소, 배우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사항 - 입주자저축 가입내역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
| 소득 | <input type="checkbox"/> |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
| 자산 | <input type="checkbox"/> | - 토지·주택·분양권, 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
| 기타 | <input type="checkbox"/>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국가유공자지위 및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유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 「한부모가족 지원법」 한부모가족증명서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제공목적 | 제공항목 |
|---------------------------|--------------------------|--|
| 국토교통부장관 |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원천정보 보유기관 |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 사회보장정보원 |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
|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 거주자 실태조사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관계사항 |
|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 입주자 만족도 조사 | 성명, 연락처, 주소 |
| 대행법무법인 | 권리분석 심사, 계약체결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당첨내역, 계약내역 |
| 서울특별시 | 주택소유현황, 세대원정보 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행정정보공동 이용시스템, 주민센터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주소(세대주) 과거 주소변동 사항(세대주) 전입일/변동일(세대주 및 세대원), 국내거소신고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세대주 및 세대원), 재외국민 여부(세대주 및 세대원), 교부대상사와 세대주와 다른 세대원의 이름(세대주 및 세대원),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세대원), 동거인(세대원),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중 세대주 성명/관계(세대주), 전체 주민등록번호(세대주 및 세대원) |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3. [필수]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서울특별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서울주택도시공사와의 계약 등을 통해 장기안심주택 권리분석 심사 및 계약체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대행하는 법무법인 사무소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 체결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기간

4.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필수] 본인은 위 2~4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디.

6. [필수] 본인은 위 1~4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같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7. [필수]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

연락처 : _____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서명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서명 |
|-----|---------------|----|-----------|----|--------|----|-----------|
| 홍길동 | 110101-101111 | 본인 | (홍길동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 (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등본상 무주택세대구성원 모두 기재하고 서명하세요.

등본상 분리 배우자일 경우 배우자 세대원 모두 기재하고 서명하세요.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해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청약업무 수행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등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구분 | 제공 동의 | 개인정보 내역 |
|----|--------------------------|---|
| 기본 | <input type="checkbox"/> |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 - 주소, 배우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사항 - 입주자저축 가입내역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
| 소득 | <input type="checkbox"/> |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
| 자산 | <input type="checkbox"/> | - 토지·주택·분양권, 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
| 기타 | <input type="checkbox"/>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국가유공자지원 및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유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 「한부모가족 지원법」 한부모가족증명서 |

예시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제공목적 | 제공항목 |
|---------------------------|--------------------------|--|
| 국토교통부장관 |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원천정보 보유기관 |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 사회보장정보원 |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
|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 거주자 실태조사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관계사항 |
|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 입주자 만족도 조사 | 성명, 연락처, 주소 |
| 대행부동산 중개업자 | 권리분석 심사, 계약체결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당첨내역, 계약내역 |
| 서울특별시 | 주택소유현황, 세대원정보 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행정정보공동 이용시스템, 주민센터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주소(세대주) 과거 주소변동 사항(세대주) 전입 일 / 변동 일 (세대주 및 세대원), 국내 거소신고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세대주 및 세대원), 재외국민 여부(세대주 및 세대원), 교부대상사와 세대주와 다른 세대원의 이름(세대주 및 세대원),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세대원), 동거인(세대원),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중 세대주 성명/관계(세대주), 전체 주민등록번호(세대주 및 세대원) |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3. [필수]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서울특별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서울주택도시공사와의 계약 등을 통해 장기안심주택 권리분석 심사 및 계약체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대행하는 법무법인 사무소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 체결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기간

4.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필수] 본인은 위 2~4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

6. [필수] 본인은 위 1~4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같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7. [필수]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

010-1111-1111

연락처 : _____

이H 서울주택도시공사

0633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4-5)

www.i-sh.co.kr

콜센터 1600-3456